

2018.07.03.

한양 100년의 꿈



HANYANG UNIVERSITY

2019학년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시 나군** 모집요강



한양대학교
HANYANG UNIVERSITY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주요사항

● **지원자격** (아래의 1, 2, 3을 모두 충족해야 함. 상세 내용은 4page 참조)

1.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2019년 2월까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공인영어 정기시험(TEPS, TOEIC 또는 TOEFL iBT)에 응시하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성적표 원본을 제출하는 자(2016년 10월 9일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함)
3. 2018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한 자

● **모집군 변경**

구분	변경전 (2018학년도 이전)	변경후 (2019학년도)
모집군	정시 가군	정시 나군

- 원서접수: 2018.10.01.(월) 09:00 ~ 10.05.(금) 18:00
- 심층면접: 2018.11.17.(토)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법학전문대학원 전문석사학위과정 100명

● **전형방법** (실질반영 비율은 8page 참조)

사정단계	전형요소별 배점						합계
	학부성적	공인영어	LEET 언어추리	서류평가	LEET 논술	심층면접	
1단계 (3.5배수 내외)	20점	10점	30점	20점	-	-	80점
2단계 (최종선발)	80점(1단계 점수의 합)				10점	10점	100점

● **심층면접 방법**

- 제시문 관련 질의 응답
- 소통능력, 분석력, 판단력, 논리성 및 문제해결 능력 등 지원자의 법학적성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

- 인터넷 원서접수 : 2018.10.01.(월) 09:00 ~ 10.05.(금) 18:00
- 모집요강의 내용이 수정될 수 있으므로 원서접수 전 입학처 홈페이지의 공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http://go.hanyang.ac.kr>)

목 차

▶ 법학전문대학원 정시 나군 전형일정	1
▶ 모집인원	2
▶ 학생선발비율	3
▶ 지원자격	4
▶ 전형방법	8
▶ 제출서류 안내	12
▶ 서류제출 유의사항	14
▶ 지원자 유의사항	16
▶ 전형료 및 안내사항	18
▶ 지원서식 및 증빙서류 관련 유의사항	21
▶ 지원자 확인 서약서(1-1)	22
▶ 자기소개서(1-2)	23
▶ 이력표(1-3)	25
▶ 경력사항(1-4)	26
▶ 제출서류 목록(1-5)	28
▶ 특별전형 지원을 위한 자기확인서	29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정시 나군 전형일정

구분	일시	안내사항
원서접수 (인터넷접수)	2018.10.01.(월) 09:00 ~ 2018.10.05.(금) 18:0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원서접수 링크 게시(http://go.hanyang.ac.kr) • 별도의 모집요강 교부는 없으며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아 사용 • 24시간 접수가능. 다만, 원서접수 마감일은 18시까지만 접수함 • 지원현황발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0.01.(월) ~ 10.04.(목) 18시 이후 ☞ 10.05.(금) 10시, 15시 및 마감 이후
서류제출	2018.10.01.(월) 10:00 ~ 2018.10.08.(월) 17:00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우편 또는 방문(택배 포함) 제출 • 【등기우편】 2018.10.08.(월) 국내 우체국 소인분까지 (우편번호 04763)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222 한양대학교 본관 1층 입학처 법학전문대학원 입시담당자 앞 • 【직접방문】 2018.10.08.(월) 17:00까지 • 토·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서류접수를 받지 않음 • 지원양식은 파일을 내려 받아 작성 후 서류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 • 기한 내에 서류 미제출자는 합격자 선발에서 제외됨
1단계 합격자 발표 (3.5배수 내외)	2018.11.13.(화) 14:00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발표(http://go.hanyang.ac.kr) • 별도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수험표는 고사 응시에 필요하므로 반드시 출력하여 보관해야 함 • 고사장, 고사시간 및 기타사항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심층면접	2018.11.17.(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대학교 서울캠퍼스 내 지정 고사장 • 고사장, 고사시간 및 기타 안내사항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에 게시된 내용을 반드시 확인한 후 응시할 것(별도 예비소집 없음) • 고사 당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 및 수험표(인터넷출력) 미지참시 응시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응시자는 본교가 지정한 고사장 입장 완료시간까지 입장해야 함
최초합격자 발표	2018.12.07.(금) 14:00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발표(http://go.hanyang.ac.kr) • 별도의 개별통지는 하지 않음 • 등록방법은 합격자 유의사항 참조
최초합격자 등록	2019.01.02.(수) ~ 2019.01.03.(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대학교 지정은행에 등록예치금 납부 • 합격자가 등록기간 내에 등록예치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합격이 취소됨
추가1차 합격자발표	2019.01.07.(월) 14:00 예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발표(http://go.hanyang.ac.kr) • 등록방법은 합격자 유의사항 참조
추가2차 이후 합격자발표	추후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발표(http://go.hanyang.ac.kr) •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 전화 통보함
등록금 차액 납부	추후공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양대학교 지정은행에 등록금 차액 납부 • 합격자가 등록기간 내에 등록금 차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등록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합격이 취소됨

※ 위 전형 일정은 원서접수 후 지원자 수, 고사실시 여건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음
 변경 내용은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 공지를 통해 확인 바람

모집인원

모집단위	군	전형유형	모집인원
법학전문대학원	나군	일반전형	93명
		특별전형	7명
합계			100명

- ※ 지원자는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중 1개의 전형에만 지원해야 함
- ※ 2019학년도 ‘정원외 인원(결원보충)’의 선발은 2018학년도에 발생하는 결원인원 [결원인원 확정일: 2019.02.28.(목)]에 따라 정해지며, 별도의 전형을 진행하지 않고 예비후보자 순번대로 선발함 (다만, 정원외 선발인원은 입학정원의 10%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로 함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조 제2항))
- ※ ‘정원외 인원(결원보충)’을 선발할 경우 모집인원이 변동될 수 있음

학생 선발비율

1.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원내 모집인원의 7%를 특별전형 선발인원으로 정하여 신체적,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에서 선발함
 - 가. 특별전형 선발인원 7명 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능 가구에 해당되는 자를 3명 이상 선발함
 - 나. ‘가’ 항목은 권익위원회의 폐지 권고가 있을 경우 폐지될 수 있음

2.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모집인원의 40% 이상은 학부과정에서 법학이 아닌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선발함
 - 가. 법학 이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가 있는 경우 비법학사로 볼 수 있고, 복수의 학사학위가 있는 경우 법학사 또는 비법학사 중 하나를 선택하여 지원해야 함
 - 나. 법학사 취득 후 동일한 대학교 또는 타 대학교 학부과정에 학사 편입학하여 다른 분야의 학사 학위를 취득한 경우 비법학사로 볼 수 있고, 위 가.의 내용과 같이 법학사 또는 비법학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며, 특정 대학교 재학 중 타 대학교로 일반 편입학하여 졸업하는 경우에는 수여받은 학사학위의 비법학사 해당 여부를 판단함
 - 다. 대학원 과정에서 법학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했어도 학부과정에서 법학 이외의 분야에서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경우 비법학사에 해당됨
 - 라. 비법학사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가 그 여부를 판단함

3.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시행세칙에 근거하여, 모집인원의 40% 이상은 학부과정에서 한양대학교가 아닌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를 선발함
 - 가. 타 대학교 출신자인지 여부는 기본적으로 지원자가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대학교를 기준으로 함
 - 나. 최초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신입학하여 최종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했을 경우 본인이 선택할 수 있음
 - 다. 일반편입 또는 학사편입이 있는 경우에는 최초 학사학위를 수여받은 대학교를 기준으로 함
 - 라. 타 대학교에서 학사학위를 수여받고 한양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수여받은 경우 타 대학교 출신자로 인정함
 - 마. 타 대학교 학사학위 취득자 해당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가 그 여부를 판단함

지원자격

1. 공통사항: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모두 아래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함

가. 국내외 정규대학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 또는 2019.02.28.(목)까지 학사학위 취득예정자 또는 「고등교육법 제33조(입학자격)」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 공인영어 정기시험(TEPS, TOEIC 또는 TOEFL iBT)에 응시하여 서류제출 마감일 까지 성적표 원본을 제출하는 자

- 2016년 10월 9일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에 한하여 인정함
- TEPS와 TOEIC은 국내 정기시험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함

다. 2018년 법학적성시험(LEET)에 응시하여 공식 성적을 취득한 자

2. 특별전형: 위의 공통사항을 충족하면서 아래 대상에 해당하는 자

대상	지원자격	제출서류
신체적 배려 대상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상 제1~6급에 해당하는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인 증명서(본인) • 자기확인서(본교 소정양식)
경제적 배려 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급자 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기확인서(본교 소정양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복지급여 수급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복지급여 수급자 : 자활, 장애수당,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경감, 한부모가족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 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본인부담경감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 • 주민등록등본 • 자기확인서(본교 소정양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으로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능 가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차상위계층 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준) • 주민등록등본 • 자기확인서(본교 소정양식)

대상	지원자격	제출서류
사회적 배려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8조에 의하여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본인) • 학력인정확인서(담당자 및 연락처 기재)
	보훈관계 법령의 교육지원대상자로 판정을 받은 자 ※ 독립유공자 본인 및 (손)자녀, 국가유공자 본인 및 자녀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 법령에 근거한 확인원(담당자 연락처 기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제5조에 의하여 인정된 의사상으로 제5조 제5항에 따른 부상등급 결정을 받은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상자 증명서(본인)(부상등급 및 담당자 연락처 기재) • 의사상자 인정결과 통보서(본인)
	「지방자치법」 제3조에 의한 농어촌지역(읍·면)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중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까지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특수목적고 중 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와 자율(립)형사립고는 농어촌 지역(읍·면) 고등학교에서 제외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학교 생활기록부 (재학당시 학교 소재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재학당시 학교 소재지가 명시되어 있어야 함)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혼인관계증명서(부모) • 부모의 국적관련증명서 또는 귀화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본인기준)

※ 특별전형 대상자 관련 제출 서류는 2018년 9월 30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 보훈관련 교육지원대상자 및 증명서류 세부 내용

① 보훈관련 교육지원대상자 (“○”표시자 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임)

법령	조항	유공자	유공자와의 관계				일반적 명칭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	
독립법	제4조제1호	순국선열	×	○	○	○	독립유공자
독립법	제4조제2호	애국지사	○	×	○	○	
예우법	제4조제1항제3호	전몰군경	×	○	○	×	국가유공자 (다만, 참전유공자는 교육지원비대상임)
예우법	제4조제1항제4호	전상군경	○	×	○	×	
예우법	제4조제1항제5호	순직군경	×	○	○	×	
예우법	제4조제1항제6호	공상군경	○	×	○	×	
예우법	제4조제1항제7호	무공수훈자	○	×	○	×	
예우법	제4조제1항제8호	보국수훈자	○	×	○	×	
예우법	제4조제1항제9호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	×	○	×	
예우법	제4조제1항제10호	참전유공자	×	×	×	×	
예우법	제4조제1항11호	4·19혁명사망자	×	○	○	×	
예우법	제4조제1항12호	4·19혁명부상자	○	×	○	×	
예우법	제4조제1항13호	4·19혁명공로자	○	×	○	×	
예우법	제4조제1항14호	순직공무원	×	○	○	×	
예우법	제4조제1항15호	공상공무원	○	×	○	×	
예우법	제4조제1항16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순직자	×	○	○	×	
예우법	제4조제1항17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	×	○	×	
예우법	제4조제1항18호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	×	○	×	
예우법	제73조	6·18자유상이자	○	×	○	×	6·18자유상이자
예우법	제73조의2	지원대상자	○	×	○	×	지원대상자
고엽제법	제2조제3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	○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996.3.31편입)
5·18법	제4조제1호	5·18민주화운동사망자	×	○	○	×	5·18민주유공자 (2002.7.26편입)
5·18법	제4조제2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	○	×	
5·18법	제4조제3호	5·18민주화운동희생자	○	×	○	×	
특임법	제3조제1호	특수임무사망자	×	○	○	×	특수임무유공자 (2005.7.29편입)
특임법	제3조제2호	특수임무부상자	○	×	○	×	
특임법	제3조제3호	특수임무공로자	○	×	○	×	
보훈보상법	제2조제1항제1호	재해사망군경	×	○	○	×	보훈보상대상자 (2012.7.1.시행)
보훈보상법	제2조제1항제2호	재해부상군경	○	×	○	×	
보훈보상법	제2조제1항제3호	재해사망공무원	×	○	○	×	
보훈보상법	제2조제1항제4호	재해부상공무원	○	×	○	×	

② 보훈관련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류

대상자	근거	증명서류
독립유공자의 자녀 및 손자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호 및 제2호	독립유공자(유족) 확인원
국가유공자 및 그 자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3호 ~ 제18호, 제73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지원대상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73조의2 [법률 제11029호]	지원대상자(유족) 확인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수당지급 대상자) 및 그 자녀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호 및 제7조 제9항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5·18민주유공자 및 그 자녀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호 ~ 제3호	5·18민주유공자(유족) 확인원
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자녀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3조 제1호 ~ 제3호	특수임무유공자(유족)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및 그 자녀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제4호	보훈보상대상자(유족) 확인원

3. 유의사항

- 가. 특별전형 대상자 제출서류는 발급일자가 2018.09.30. 이후인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 나. 국외소재 정규대학 출신자의 경우, 해당 국가의 공인을 받은 대학인 경우만 지원이 가능하며 입학 후라도 해당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전형방법

1. 전형요소 및 배점

사정단계	전형요소별 배점						합계
	학부성적	공인영어	LEET 언어이해 및 추리논증	서류평가	LEET 논술	심층면접	
1단계 (3.5배수 내외)	20점	10점	30점	20점	-	-	80점
2단계 (최종선발)	80점(1단계 점수의 합)				10점	10점	100점

2. 1단계 전형요소 실질 반영 비율

구분	학부성적	공인영어	LEET 언어이해 및 추리논증	서류평가	합계
명목반영점수	20	10	30	20	80
기본점수	8	5	9	8	-
실질반영점수	12	5	21	12	50
실질반영비율	24%	10%	42%	24%	100%

3. 전형요소별 성적 반영방법

가. 학부성적

- 반영점수 산출 방법

■ $X = \text{학부성적 백점 만점 환산 점수}$

구분	반영점수 산출식
$70 \leq X$ 인 경우	반영점수 = $8 + (X - 70) * 0.4$
$X < 70$ 인 경우	반영점수 = 8

- 반영대상 성적은 학부과정 전 학년, 전 과목 성적으로 함 (다만, 졸업예정자는 원서접수일 현재 확정된 성적을 기준으로 함)
- 최종학기 성적을 포함한 평균성적이 백점만점 환산점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백점만점 환산점수를 제공하지 않거나 산출이 불가능한 대학 출신자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하여 성적을 반영함

- 학부과정이 예과와 본과로 나누어진 학과 출신자의 경우 본과 성적만 반영함
- 학사학위 취득(예정) 1개 대학의 성적만 반영함
- 성적 특이자가 있을 경우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결정함

나. 공인영어성적(TEPS, TOEIC 또는 TOEFL iBT)

- 반영점수 산출 방법
 - 공인영어성적을 아래 변환점수표에 적용하여 반영점수를 산출함

TEPS	TEPS(신)	TOEIC	TOEFL iBT	반영점수
893~990	516~600	970~990	115~120	10.0
852~892	489~515	950~969	111~114	9.5
798~851	447~488	920~949	107~110	9.0
737~797	409~446	880~919	102~106	8.5
681~736	374~408	840~879	96~101	8.0
637~680	348~373	800~839	91~95	7.5
602~636	328~347	760~799	86~90	7.0
571~601	309~327	720~759	82~85	6.5
541~570	292~308	680~719	78~81	6.0
515~540	278~291	640~679	74~77	5.5
514이하	277이하	639이하	73이하	5.0

- 공인영어성적은 2016년 10월 9일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으로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한 성적표를 반영함
- TEPS와 TOEIC은 국내 정기시험에서 취득한 성적만 인정함(국외에서 취득한 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다. 법학적성시험(LEET) 언어이해영역 및 추리논증영역 성적

- 반영점수 산출 방법

$$\textcircled{1} \text{ 언어이해영역 환산점수 산출(A)} = \frac{\text{지원자의 언어이해영역 표준점수}}{\text{언어이해영역 표준점수 최상위 급간 상한점수}}$$

$$\textcircled{2} \text{ 추리논증영역 환산점수 산출(B)} = \frac{\text{지원자의 추리논증영역 표준점수}}{\text{추리논증영역 표준점수 최상위 급간 상한점수}}$$

$$\textcircled{3} \text{ 언어이해영역 및 추리논증영역의 환산점수 평균 산출(C)} = \frac{A + B}{2}$$

④ 언어이해영역 및 추리논증영역의 환산점수 평균으로 반영점수 산출

구분	반영점수 산출식
$0.95 \leq C$	반영점수 = 30
$0.45 \leq C < 0.95$	반영점수 = $9 + \{(C-0.45) * 42\}$
$C < 0.45$	반영점수 = 9

- 언어이해영역과 추리논증영역의 표준점수는 2018년에 응시하여 제출한 법학 적성시험(LEET) 성적표의 표준점수를 적용함

라. 서류평가

- 평가항목: 인성, 발전가능성, 학업 역량, 소양, 사회적 책무성
- 지원양식(본교 소정양식) 및 지원자가 제출하는 증빙서류 등을 종합 평가함
- 자기소개서, 입학원서, 기타 제출서류 등에 부모·친인척의 성명, 직업명, 직장명 등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됨. 이를 위반한 때에는 실격 또는 감점 조치함

〈예시〉

구 분	기재예시	불이익 내용
실명 등 특정가능정보 기재 시	① 부모·친인척의 실명 기재 ② 아버지가 ○○지방법원장	실격
직장(직위, 직업)명 기재 시	① ○○○에서 근무하신 아버지 ② 검사장을 지내신 큰아버지 ③ 법조인(변호사, 검사, 판사 등),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직자(공무원) 등	실격
광의적 직종명 기재	①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② 할아버지부터 의료업에 종사하여 ③ 회사를 다니던 아버지	감점조치

※ 기재 예시는 단순 예시이며, 사실과 무관함

※ 특별전형의 경우 역경 극복 등 경험 설명을 위해 부득이한 단순 직종명 기재를 예외적으로 인정

※ 간접적으로 법조 등 유력 직업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감점 조치함

- 초·중·고교 과정의 내용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마. 법학적성시험(LEET) 논술 성적

- 2018년에 응시한 법학적성시험(LEET)의 논술영역을 본교에서 채점하며, 추가로 본교에서 실시하는 논술시험은 없음

바. 심층면접

- 소통능력, 분석력, 판단력, 논리성 및 문제해결능력 등 지원자의 법학적성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되, 법학에 관한 지식은 평가하지 아니함
- 심층면접 결시자 및 심층면접 점수가 6점(10점 만점 기준) 미만인 자는 다른 전형요소의 성적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함

4. 1단계 합격자(심층면접 대상자) 선발

- 가. 학부성적, 공인영어성적, LEET 언어이해 및 추리논증, 서류평가 성적을 합산하여 총점순으로 선발함
- 나. 일반전형과 특별전형 각각 최종 선발인원의 3.5배수 내외에서 선발함

5. 2단계 합격자(최종합격자) 선발

- 가. 1단계 성적과 LEET 논술, 심층면접 성적을 합산하여 총점순으로 선발함
- 나. ‘정원내 인원’과 ‘정원의 인원(결원보충)’을 합산하여 선발함
- 다. 특별전형 선발인원 7명 중 법학전문대학원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가구,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차상위가구,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 가능 가구에 해당되는 자를 3명 이상 선발함
- 라. ‘다’ 항목은 권익위원회의 폐지 권고가 있을 경우 폐지될 수 있음

6. 동점자 처리기준

단계	동점자 처리기준
1단계	동점자 모두 선발함
2단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심층면접 성적 우수자 • 2순위 : LEET 언어이해 및 추리논증 성적 우수자 • 3순위 : 학부성적 우수자 • 4순위 : 서류평가 성적 우수자 • 5순위 : LEET 논술 성적 우수자

제출서류 안내

1. 공통서류(필수 제출)

번호	구분	비고
1	입학원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터넷 접수 후 출력
2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졸업예정증명서 대신 재학증명서 제출 가능 • 2018년 9월 9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다만, 해외발급 서류는 종료시점에 발급받은 것도 유효함)
3	대학 성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학기 이상 수학했던 전 과정의 증명서 제출 • 성적증명서에는 최종학기 성적을 포함한 평균성적이 백점 만점 환산점으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졸업예정자는 직전 학기까지의 평균성적이 백점만점 환산 점수로 기재되어 있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기로만 기재가 가능한 경우 담당자 서명 날인 필요 * 백점만점 환산점수를 제공하지 않는 대학 출신자는 본교 법학전문 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으로 학부성적에 반영함 • 국외소재 정규대학 출신자는 출신대학의 이수학기, 성적산출 기준 등이 성적증명서 뒷면에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별도의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함 • 2018년 9월 9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다만, 해외발급 서류는 종료시점에 발급받은 것도 유효함)
4	공인 영어 정기시험 성적표 (TEPS, TOEIC, TOEFL iBT)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6년 10월 9일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표 • TEPS, TOEIC은 국내 정기시험 성적표만 인정 • TOEFL iBT 원본 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제출서류와는 별개로 2018년 11월 30일까지 ETS사로부터 본교 입학처에 공식 성적표가 도착하도록 Score Reporting을 신청해야 함
5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에 응시한 법학적성시험(LEET) 성적표
6	지원양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식 파일을 내려받아 작성 후 서류 제출 마감일시까지 제출
	6-1. 지원자 확인 서약서	
	6-2. 자기소개서	
	6-3. 이력표	
	6-4. 경력사항	
	6-5. 제출서류 목록표	

2. 추가제출서류(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번호	구분	비고
1	석사학위과정 이상의 학위수여(예정)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위수여예정증명서 대신 재학증명서 제출 가능 • 2018년 9월 9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다만, 해외발급 서류는 당시에 발급받은 것도 유효함)
2	석사학위과정 이상의 성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년 9월 9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다만, 해외발급 서류는 당시에 발급받은 것도 유효함)
3	장학금수혜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한 증명서
4	기타활동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연수, 연구, 창작 및 동아리활동, 인턴십 등에 대한 증명서 • 학부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한 증명서
5	사회봉사활동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기관 연락처, 담당자명, 봉사기간 및 총 시간이 명시된 증명서 • 학부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한 증명서
6	공인외국어성적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한 공인성적표
7	수상실적 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한 증명서
8	자격증, 면허증, 특허증, 실용신안, 국가고시합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한 증명서
9	논문 또는 저작물 등재확인서 및 요약본(초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한 등재 확인서 • 논문 또는 저작물의 요약본(초록)도 제출
10	재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부과정과 그 이후에 발생한 것에 대한 증명서 •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1개월 이상)도 제출
11	병적증명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병역복무 중이거나 병역복무가 종료한 경우에 한함
12	자기확인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전형 지원자에 한함 • 본교 소정양식으로 원서접수 전 입학처 홈페이지 게시
13	특별전형 대상자 증빙서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전형 지원자에 한함 • 2018년 9월 30일 이후 발급한 서류만 인정

※ 추천서는 제출서류에 해당하지 않음

서류제출 유의사항

1. **서류제출 시 모든 증명서는 반드시 원본을 제출해야 함.** 다만, 재발급이 불가능하여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본교 입학처에 방문하여 원본과 사본을 함께 제시하고 원본대조를 받아야 함. 원본 확인이 안 된 사본 서류는 지원자격 판단 및 서류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2. 외국대학 졸업자의 경우
 - 가. 해당국가의 공인을 받은 대학일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입학 후라도 해당 내용에 문제가 있을 경우, 입학을 취소할 수 있음
 - 나. 영어 이외의 외국어 서류는 반드시 공증 받은 한글 번역서를 첨부하여 원본과 함께 제출해야 함
 - 다. 외국대학 학위취득자는 학력조회와 관련된 협조를 요청받을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하며, 학력조회 미회신자는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라. 최종합격자는 대학 졸업증명서와 대학 성적증명서에 해당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아포스티유 확인을 받거나 해당국가에 소재한 한국영사관에서 영사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함. 단, 중국에서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의 경우에는 ‘教育部学位与研究生教育发展中心’(www.cdgd.edu.cn)에서 인증을 받아 제출해도 인정함
3. TOEFL iBT 원본 성적표를 제출한 자는 제출서류와는 별개로 2018년 11월 30일 까지 본교 입학처에 ETS사로부터 직접 공식 성적표가 도착하도록 Score Reporting을 신청해야 함. ETS사로부터 직접 공식 성적표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

▶ 성적표 발송 요청 시 수신기관 코드 및 주소

◦ 기관코드

Name of Institution: Office of Admissions, Hanyang University

Institution Code: 7106

Department Code: 00

◦ Address: Office of Admissions, Hanyang University, 222 Wangsimni-ro, Seongdong-gu, Seoul, 04763, Korea

4. 입학원서(출력본)를 포함한 제출서류를 서류제출기간 마감까지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서류를 전형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서류 미제출자로 처리되어 합격자 선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5.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정정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6. 공통서류와 추가제출서류 이외에 사실 확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7. 초·중·고교 과정의 내용은 평가에 반영하지 않으므로 작성하거나 제출할 필요 없음
8. 자기소개서, 입학원서, 기타 제출 서류 등에 기재가 금지된 사항을 기재한 것이 추후 발견된 경우 입학에 취소할 수 있음
9. 입학원서 및 제출서류를 허위기재하였거나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한 자, 대리시험 및 부정행위자는 불합격 처리하며, 입학 후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입학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또는 학위에 대한 조회 결과 인정되지 않는 학위로 확인될 경우 입학에 취소할 수 있음
10.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 필수요소(법학적성시험 성적, 학부성적, 공인어학성적)를 위·변조한 자에 대해서는 당해 연도 법학적성시험 성적을 무효로 하고 당해 시험의 시행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 연도 5년간 법학적성시험의 응시자격을 제한함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제9차 이사회(2010.12.06.) 및 15차 총회(2011.02.14.) 심의의결 사항」
11. 모든 제출서류의 진위여부는 추후 발급기관을 통하여 반드시 조화 확인하며, 지원자가 본교에 지원하는 것으로 본교에서 제출서류 진위여부 확인을 위해 발급기관에 자료 요청을 하고 제공받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인정함
12. 합격자 중 2019년 졸업예정자는 졸업증명서 원본을 2019년 2월 28일 17시까지 입학처에 제출해야 함

지원자 유의사항

1.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시 나군 지원자는 군이 같은 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 복수 지원할 수 없음
2.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시 나군과 타 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정시 가군에 모두 합격한 자는 하나의 법학전문대학원에만 등록해야 함
3. 인터넷 원서접수 마감시간까지 입학원서 작성과 전형료 결제를 완료해야만 유효한 원서접수로 인정하며, 인터넷 원서접수를 완료한 후에는 입학원서 기재사항의 수정 및 접수취소가 불가능함
4. 인터넷 원서접수 시 모든 사항을 정확히 입력해야 하며, 입력사항의 착오, 누락, 오기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은 지원자가 책임져야 함
5. 지원자격이 없는 자가 원서를 접수하면 불합격 처리하며, 전형료는 반환하지 않음
6.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는 24시간 연락(전화)이 가능해야 하며, 전화번호 및 주소의 오기 또는 변경으로 연락이 두절되어 발생하는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또한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즉시 입학처로 통지해야 함(변경 통지는 본인이 방문 또는 전화로 통지하기 바람)
7. 1단계 합격자는 반드시 지정한 날에 면접고사에 응시해야 하며, 수험생은 고사실에 입실하면 고사종료 시까지 출입이 제한됨
8. 면접고사 당일 소음을 유발하거나 부정행위의 소지가 있는 스마트폰, 전자시계, 태블릿 PC 등의 전자기기는 전원을 끈 후 고사진행자의 지시에 따라 보관하여야 함. 만일 고사시간 중 전자기기의 사용 또는 발견 시 부정행위로 간주하여 퇴실 조치함
9. 지원자의 전형 성적이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의 수학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모집인원과 상관없이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10. 개별 입학전형 평가내용 및 성적은 공개하지 않음

11. 최초합격자는 개별 합격통지를 하지 않으므로 본인이 반드시 지정된 합격자 발표일 (2018년 12월 7일)에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go.hanyang.ac.kr>)에서 확인해야 하며,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음
12. 2019년 졸업예정자는 2019년 2월 28일까지 졸업을 하지 못하면 합격이 취소됨
13. 본 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입학전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14.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한양대학교 입학처(전화 02-2220-0074~0077)로 문의

전형료 및 전형료 환불 안내

1. 전형료

전형유형	전형료	1단계 불합격자 환불전형료
일반전형	250,000원	80,000원
특별전형	50,000원	없음

※ 인터넷 원서접수 수수료는 본교가 부담함

※ 1단계 불합격자에게는 인터넷 입학원서 작성 시 지원자가 기재한 통장계좌로 2단계 응시료 80,000원을 환불함

2. 전형료 환불

가. 아래의 전형료 전액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2018년 12월 7일까지 환불 의사를 밝히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경우 전형료 전액을 환불함

나. 전형료 전액 반환 사유

- 1) 본교의 귀책사유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 3) 질병 또는 사고 등으로 의료기관에 입원하거나 본인의 사망으로 입학전형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다. 위의 전형료 전액 반환 사유를 제외한 부득이한 사유(질병, 사고 등)가 발생하여 입학전형에 응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통해 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 시기에 따라 전형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함

신청 시기	환불 금액
원서접수 마감 전	전형료 전액
원서접수 마감 후 3일 이내	전형료의 70% 환불
원서접수 마감 후 4일 이후부터 고사 후 3일 이내	전형료의 50% 환불
고사 후 4일 이후	반환하지 않음

※ 타 대학교 전형과 고사시간이 중복될 경우,

- 원서접수 전에 고사시간을 공지한 전형의 경우는 환불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
- 원서접수 후에 고사시간을 공지하여 타 대학과 고사시간이 중복되는 전형의 경우 타 대학 수험표 및 고사일정표 등의 증빙서류 제출 시 입학전형위원회에서 심의하여 환불 여부를 결정함

- 라. 고등교육법 제34조의4 제5항에 따라 입학전형 관련 수입·지출에 잔액이 발생할 경우, 납부한 전형료에 비례하여 반환할 수 있음
- 금융기관 계좌로 이체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에서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데 드는 비용을 차감하고 반환할 수 있음
 - 금융기관의 전산망을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 반환할 금액 이상이면 반환하지 않을 수 있음

안내사항

1. 이의신청

입학전형의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및 불복은 최초합격자 공고일(2018년 12월 7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에 서면으로 제기해야 하며, 그 이후의 절차는 관련법령 및 본교 법학전문대학원의 관련규정과 학칙, 사정원칙 등에 의해 진행됨

2.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학생 선발의 공정성 확보 방안

- 가. 서류평가 위원에게 제공되는 자기소개서와 이력표, 경력사항 내용에서 지원자의 성명, 사진, 수험번호 등 개인 식별정보를 음영 처리함
- 나. 서류평가 위원으로 외부 위원을 위촉하고 각 평가단위별 1인 이상 외부 위원을 반드시 포함함
- 다. 심층면접 시행에 있어서 비법학사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법학에 관한 지식은 평가하지 아니함
- 라. 법학 이외의 다양한 학문적 배경을 가진 비법학사 면접대상자에 대한 공정한 평가를 위하여 심층면접 문제 출제위원 및 면접위원에 반드시 비법학전공자를 포함시킴
- 마. 심층면접 문제출제는 공정성 확보차원에서 외부와의 교류, 통신 및 인터넷 사용이 차단된 공간에서 출제 전 기간 동안 공정관리위원의 감독 하에 실시함
- 바. 심층면접 시 가번호를 부여하고, 입학원서나 자기소개서 등 수험생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정보를 면접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무(無)자료 면접)
- 사. 심층면접 시 외부 면접위원을 위촉하고, 면접단위별 1인 이상 외부 면접위원을 반드시 포함함

- 아. 법학적성시험 논술영역 답안지 평가에 있어서 지원자 관련 정보는 제거하여 채점의 공정성을 해칠 수 있는 수험생 정보가 평가위원에게 전달되는 것을 차단하며, 평가는 법학전공자와 비법학전공자가 복수로 평가함
- 자. 입학전형 위원 선정에 앞서 입학전형 위원 중에서 해당 입학년도의 지원자와 개인적 친분 및 이해관계를 보유하는 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사하며, 개인적 친분 및 이해관계를 보유한 입학전형 위원은 전형에서 제외함
- 차. 상기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본교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름

본 모집요강은 한양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go.hanyang.ac.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전화문의: 한양대학교 입학처(02-2220-0074~0077) • E-MAIL: admission@hanyang.ac.kr

지원서식 및 증빙서류 관련 유의사항

1. 지원서식 각 항목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타인이나 전문기관에서 작성한 것으로 판명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자기소개서, 입학원서, 기타 제출서류 등에 입학전형에서 특혜를 받거나 또는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한 때에는 실격 또는 감점 조치합니다.

〈예시〉

구 분	기재예시	불이익 내용
실명 등 특정가능정보 기재 시	① 부모·친인척의 실명 기재 ② 아버지가 ○○지방법원장	실격
직장(직위, 직업)명 기재 시	① ○○○에서 근무하신 아버지 ② 검사장을 지내신 큰아버지 ③ 법조인(변호사, 검사, 판사 등), 교수, 언론인, 정치인, 공직자(공무원) 등	실격
광의적 직종명 기재	① 사업을 하시던 아버지 ② 할아버지부터 의료업에 종사하여 ③ 회사를 다니던 아버지	감점조치

※ 특별전형의 경우 역경극복 등 경험 설명을 위해 부득이 단순 직종명 기재를 예외적으로 인정

※ 간접적으로 법조 등 유력 직업을 암시하는 경우에도 감점 조치함

3. 경력사항(1-4) 및 제출서류목록(1-5) 작성할 때 추가할 사항이 있을 시, 행(줄)은 추가할 수 있으나 양식은 변경할 수 없습니다.
4. 경력사항(1-4)에 작성된 내용을 입증하는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빙서류가 없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됩니다.

※ 증빙서류는 반드시 원본만 인정하며, 꼭 반환이 필요한 서류의 경우 서류제출기간 중 입학처(장소: 신본관 1층)를 방문하여 서류사본에 원본대조 확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서류제출기간의 토요일은 서류접수를 받지 않음]

5. 작성이 완료된 지원서식 제출 시에는 지원자확인서약서(1-1), 자기소개서(1-2), 이력표(1-3), 경력사항(1-4) 및 제출서류목록(1-5)의 순서대로 정리하여 분리되지 않도록 좌측 상단을 스테이플러로 철하여 주세요.
6. 증빙서류는 A4용지 크기로 제출하되, 제출서류목록(1-5)에 기재된 목록번호 순서대로 집계 또는 클립 등으로 묶어서 제출하세요.
7. 문서형태가 아닌 증빙자료(CD, 멀티미디어 파일 등)는 평가되지 않으니 제출하지 마세요.
8. 초·중·고교 과정의 내용은 평가되지 않으니 관련 내용을 작성하거나 제출하지 마세요.
9. 제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지원자 확인 서약서 (1-1)

□ 지원자 기재사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		
주소					
연락처(주택)		연락처(휴대전화)			
학사학위 취득(예정)대학	학교명 :		학과 :		
졸업(예정) 연도		지원군	나군	전형구분	일반/특별

※ 전형구분의 해당되는 사항에 ○표 하시기 바랍니다.(‘○표’ 는 수기도 가능함)

□ 지원자 확인서약

1. 본인은 본 지원서식을 사실에 입각하여 직접 작성하였음
2. 본인은 귀교가 본 지원서식과 관련하여 내용확인을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할 것임
3. 본인은 본 지원서식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또는 기재 금지 사항을 기재한 경우 실격 또는 입학 취소 등의 불이익을 감수할 것임
4. 본인은 입학 후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학사지도를 위해 본 지원서식과 제출서류를 활용하는 것에 대해 동의함

위 사항에 대해 확인 서약합니다.

2018 년 10 월 일

지원자 성명: _____(서명 또는 인)

한 양 대 학 교 총 장 귀 하

수험번호

자 기 소 개 서 (1-2)

- 1) 법률가가 되려는 동기와 자신이 되고자 하는 법률가의 모습
- 2) 자신의 학업 역량(전공 등 학업 성취 과정)
- 3) 자신의 관심 분야 및 경험, 사회활동 등을 중심으로 A4용지 2장 이내로 기술하여 주십시오.
 - ⇒ 자기소개서에 기재금지 문구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실격으로 처리합니다.
 - ⇒ 학부과정과 그 이후 내용으로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자기소개서 형식을 통일하기 위한 안내 : ①글꼴(휴먼명조), ②글자크기(11포인트), ③줄간격(160%)
 - ⇒ 본 글상자를 삭제하고 본문을 작성하십시오.

[Empty application form area]

이 력 표 (1-3)

대학 입학 시부터 현재까지의 경력을 연도별로 빠짐없이 기재하십시오. 각 연도별 대표적인 경력을 최대 2개까지 기재하시고, 특정연도에 특별한 경력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까지도 반드시 ‘주요경력 / 이력’ 란에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 표의 내용은 예시이며, 실제 작성시에는 이를 삭제하고 작성하십시오.

⇒ 최근 연도 이력부터 순서대로 한 페이지를 넘기지 않도록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대학 입학 및 재학, 복학 등 내용을 이력으로 기재할 경우 **대학명은 기재하지 마십시오.**

⇒ 본 글상자를 삭제하고 본문을 작성하십시오.

목록 번호	연도	기간	주요경력/이력	비고
	2017	2017.01~2017.현재	00기업 00부서 근무 중	
	2016	2016.01~2016.12	00기업 근무	
	2015	2015.03~2015.12	00기업 입사	
		2015.01~2015.02	유럽배낭여행	
	2014	2014.07~2014.12	유럽배낭여행	
		2014.01~2014.06	사법시험 준비	
	2013	2013.01~2013.12	사법시험 준비	
	2012	2012.01~2012.12	사법시험 준비	
	2011	2011.09~2011.12	사법시험 준비	
		2011.01~2011.08	대학교 재학 및 졸업(학사학위 취득)	
	2010	2010.01~2010.12	대학교 재학	
	2009	2009.01~2009.12	대학교 복학 및 재학	
	2008	2008.01~2008.12	군복무 및 만기제대	
	2007	2007.01~2007.12	군복무	
	2006	2006.03~2006.12	휴학 후 입대 군복무	
		2006.01~2006.02	대학교 00학과 재학	
	2005	2005.01~2005.12	대학교 00학과 재학	
	2004	2004.03~2004.12	대학교 00학과 입학 및 재학	

- ※ 목록번호란에는 ‘제출서류 목록(1-5)’의 목록번호를 기재
- ※ 동일한 행에 목록번호가 2개 이상 발생할 수 있음
예) 같은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목록번호와 성적증명서 목록번호
- ※ 별도의 증빙 서류가 없는 내용의 경우 목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음

경 력 사 항 (1-4)

1. 학력 및 재직사항(학부과정과 그 이후의 학력사항 및 재직사항)

목록 번호	기간	대학교/기관	전공/직책 및 담당업무	비고

- ※ 학부과정 입학 및 편입을 포함한 모든 학력사항 기재
- ※ 목록번호란에는 ‘제출서류 목록’의 목록번호를 기재
- ※ 동일한 행에 목록번호가 2개 이상 발생할 수 있음
예) 같은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목록번호와 성적증명서 목록번호
- ※ 학부과정과 그 이후의 재직사항만 기재
- ※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에서의 재직사항을 기재하고, 그 외의 재직사항은 ‘3. 활동내역’에 기재

2. 수상실적, 상벌사항, 자격증 등 업적물(수상내역, 장학금 수혜, 공인외국어성적, 자격증, 면허증, 특허증, 실용신안, 국가고시합격, 연구업적물 등)

목록 번호	수혜일/취득일/발표일	내역	수여/발급 기관	비고

- ※ 학부과정과 그 이후의 사항만 기재
- ※ 공인영어성적은 TEPS, TOEFL iBT 또는 TOEIC에 대하여 2016년 10월 9일 이후 응시하여 취득한 성적을 기재

목록 번호	징계사항 유/무 기재란			
	대학, 대학원 재학 중 징계 여부	유[] 무[]	징계내역 및 사유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지원서식

3. 활동내역(교육, 연수, 연구 및 창작활동, 동아리활동, 인턴십, 사회봉사활동 등)

목록 번호	기간	활동내용	기관명	비고

※ 학부과정과 그 이후의 사항만 기재(봉사활동의 경우 총 시간이 명시되어야 함)

제출서류 목록 (1-5)

목록 번호	제목(내용)	발급기관명	발급일자	비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공통서류(입학원서, 지원서식 제외)와 추가제출서류(특별전형 지원자의 경우 자기확인서 및 증빙서류 포함)를 모두 포함하여 목록 작성

※ 제출서류의 우측 하단에 목록번호 기재

※ 특별전형 지원자만 작성

2019학년도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특별전형 지원을 위한 자기확인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
대학교	() 대학교 () 학과 졸업(예정)		
주 소			
연락처(주택)		연락처(휴대전화)	
확 인 내 용			
<p>※ 가구의 실질소득수준, 소득원, 생계책임자, 거주형태(자가·전·월세) 등 본인이 특별전형 지원자격에 포함된다는 근거를 객관적으로 기술해 주십시오.</p>			
<p>기재한 모든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추후 허위로 기재된 부분이 있음이 판명되는 경우 입학무효처분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p>			
2018 년 10 월 일			
지원자 성명: _____ (서명 또는 인)			
한양대학교 총장 귀하			

수험번호	
------	--